

工業所有權法중 意匠商·標法改正案

主要骨子

- 1) 意匠登錄의 無效審判 請求時 그 意匠登錄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 그 意匠權의 效力을 一時 停止 시킬 수 있는 根據規定을 新設함 (案 第49條의 2)
- 2) 審査官도 利害關係人과 같이 無效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도록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制限規定을 削除함. (案 第49條第2項)

其他 參考事項

- 가. 關係法令
- 나. 豫算措置
- 다. 合議
- 라. 其他

法律第 號

意匠法 중 改正法律(案)

意匠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 第49條 第2項중 但書를 削除하고,
 第4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 第49條의 2(審判請求와 意匠權의 効力の 一時停止) ①審査官은 第49條第1項第1號의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 審判請求의 對象이된 意匠登錄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, 明白한 경우에는 그 意匠權의 效力의 一時停止를 申請할 수 있다.
 ②特許法 第97條의 2 第2項 내지 第4項은 本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.

附 則

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主要骨子

商標登錄의 無效審判請求時 그 商標登錄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, 明白한 경우에 그 商標權의 效力을 一時停止시킬 수 있는 根據規定을 新設함(案 第43條의 2)

其他 參考事項

- 가. 關係法令
- 나. 豫算措置
- 다. 合議
- 라. 其他

法律第 號

商標法 중 改正法律(案)

商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 第43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.
 第43條의 2 (審判請求와 商標權의 効力の 一時停止) ①審査官은 第43條 第3項의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 審判請求의 對象이 된 商標登錄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는 그 商標權의 效力의 一時停止를 申請할 수 있다.
 ②特許法 第97條의 2 第2項 내지 第4項은 本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.

附 則

이 법률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